

##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(안)

### ■ 제 안 사 유

- '97. 10. 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세금의 과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과세권자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있으면,
- 과세의 적법성을 충분히 심사케함으로써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, 조세행정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세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고자 함.

### ■ 주 요 골 자

-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설치 (신설)
  - 기 능 : 구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심사
  - 구 성 : 7명 (당연직 및 위촉직)
  - 임 기 : 2년 (당연직 제외)
  - 수 당 :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시 예산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지급
  -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.

### ■ 관 련 근 거

- 지방세법 제70조(과세전 적부심사), 동법시행규칙 제36조(과세전 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)
-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처리지침 : 세정 12430-1162 ('97. 10. 22)

## ■ 검토 의견 <전문위원 박종근>

### ○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

'97.10. 1차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공정, 공평과세로 신뢰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『과세적부심사위원회』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

### ○ 현재까지의 지방세 부과 고지절차는

- 세목별 납부시기를 월별로 확정하고
- 부과자료(물건)에 의한 고지서를 전산출력(OCR)
- 납액을 검토 결정하며
- 납기개시 10일전까지 고지서 송달(등기우편 또는 세무공무원 직접전달)
- 납기한은 15일간으로 (납기월 16일부터 말일까지)
-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납부
- 납기경과 50일후 1차 독촉장 발부
- 재산압류

○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,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납세자로부터 이의가 있으면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과세의 적법성을 충분히 심사결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지방세 체납에 따른 예방효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## 지 방 세 과 징 현 황 ( 구 세 )

'97. 10. 31 현재

(단위 : 천 원)

| 세 목     | 목 표 액      | 부 과 액      | 징 수 액      | 체 납 액   | 징수비율 (%) |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|
|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| 대목표      | 대부과  |
| 합 계     | 12,361,295 | 14,125,679 | 13,172,570 | 953,090 | 106.6    | 93.3 |
| 면 허 세   | 1,223,000  | 1,305,822  | 1,228,027  | 77,785  | 100.4    | 94.0 |
| 재 산 세   | 2,350,000  | 2,451,645  | 2,391,396  | 60,249  | 101.8    | 97.5 |
| 종합토지세   | 6,987,295  | 8,348,636  | 8,086,042  | 262,594 | 115.7    | 96.9 |
| 사 업 소 세 | 1,683,000  | 1,386,437  | 1,360,259  | 26,178  | 80.8     | 98.1 |
| 과년도수입   | 118,000    | 633,149    | 106,846    | 526,284 | 90.5     | 16.9 |